

「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」 개정요약서

1. 행정규칙명

- 「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」
(관세청고시 제2023-36호, '23.04.27.)

2. 개정 사유

- 관세법 제233조의2(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) 개정사항 반영
- 인증수출자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굴된 기업의 규제애로 사항 해소
- 인증 효력상실 사유 추가 및 인증취소를 위한 청문절차 구체화
- 「행정조사기본법」에 규정된 행정조사 절차 규정에 맞게 원산지 인증수출자 사후관리(서면확인/현지확인) 업무절차 정비
- 별지서식 수정 및 신설

3. 주요 개정내용

- 관세법 제233조의2에 규정된 한국원산지정보원의 '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'을 고시에 반영
 - 목적 조항에 관세법 제233조의2 제4항제3호 반영(§1)
 - 한국원산지정보원이 수행하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조문 신설(§3의2)
-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굴된 기업의 규제애로 사항 해소
 -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품목별 인증연장에 따른 비용·관리부담 해소를 위해 보유중인 품목의 인증을 일괄 연장하고 인증만료일을 통일할 수 있게 개선(§13②)
 - 개인사업자의 포괄양수도를 통한 법인전환시 신규인증 절차 없이 변경신고만으로 인증승계가 가능하도록 규정 명확화(§14③)

- 인증 효력상실 사유 추가 및 인증취소를 위한 청문절차 구체화
 - 인증수출자의 인증취소 신청을 효력상실의 사유로 추가(§15①)
 - 인증수출자의 인증취소를 위한 청문시 통지대상자의 청문일자 조정 요청 규정 신설 및 청문통지 서식 신설(§19①, 별지 제9호)
-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업무절차 정비
 - 업체에 서류제출 요구 시 신설 서식(별지 제11호)으로 요청(§17②)
 - 서면/현지확인 완료 시 7일 이내에 신설 서식(별지 제12호)으로 그 결과를 대상업체에 통지(§17③)
- 별지서식 수정 및 신설
 - 【수정 4건】 제1호의2, 제3호의2, 제4호, 제7호
 - 【신설 4건】 제9호(청문통지서), 제10호(청문일자 조정요청서), 제11호(서류제출요구서), 제12호(서면(현지)확인 결과통보서)

4. 규제대상 여부 : “해당 없음”

5. 신규조문대비표 및 개정 전문: “붙임”

6. 시행 일자 : 2024. 04. 04.